

가정상담 2016 10

통권 398호

ISSN1227-756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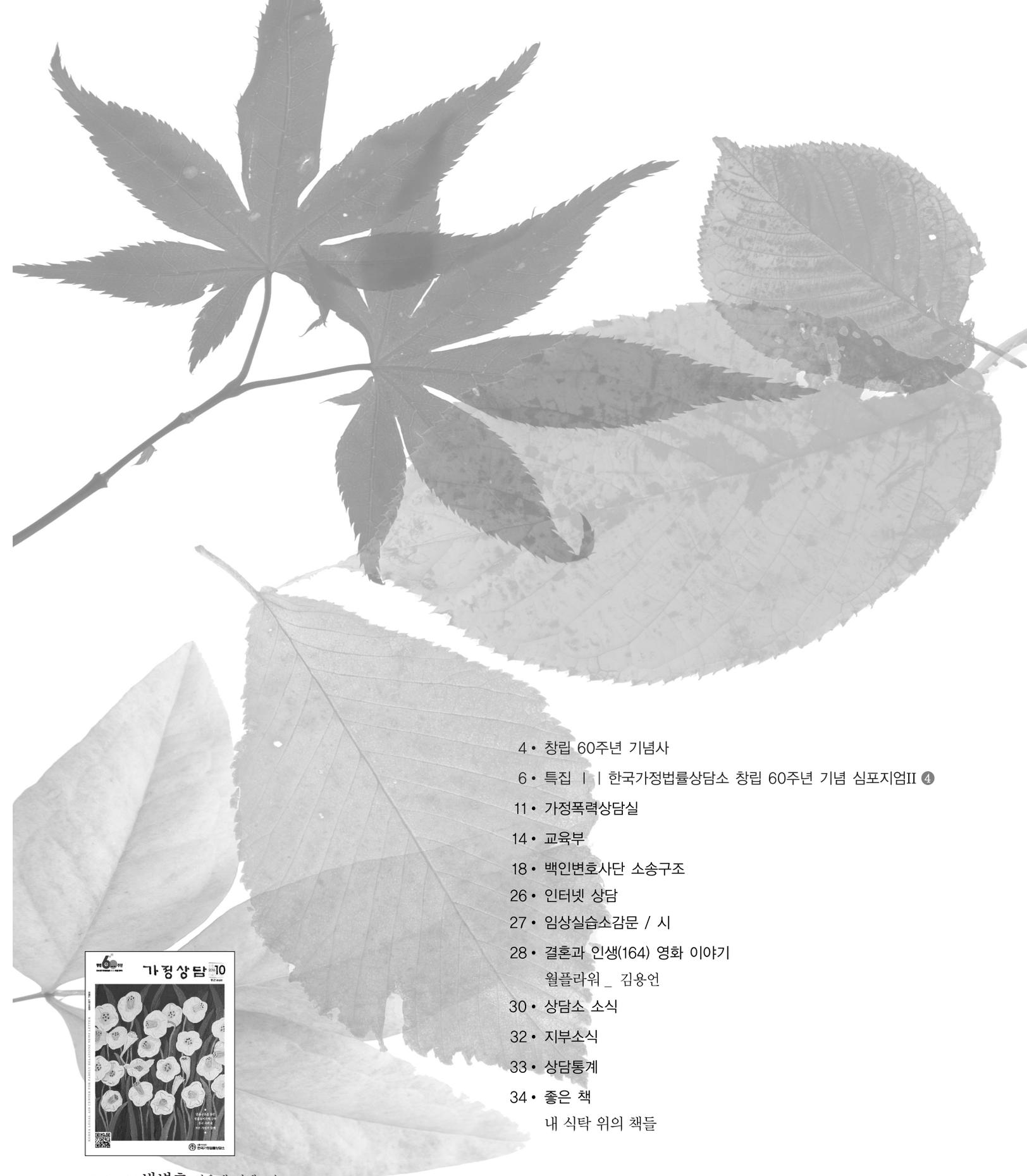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에서 비혼모 59명과 자녀 59명이 참가한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가 열렸다. (관련내용 14면)



본소는 9월 24일 서대문구 연세로 차없는 거리에서 열린 '서대문구 복지박람회'에 참여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 법교육 및 가족법개정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30면)





- 4 • 창립 60주년 기념사
-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II ④
- 11 • 가정폭력상담실
- 14 • 교육부
- 18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 26 • 인터넷 상담
- 27 • 임상실습소감문 / 시
- 28 • 결혼과 인생(164) 영화 이야기
월플라워 _ 김용언
- 30 • 상담소 소식
- 32 • 지부소식
- 33 • 상담통계
- 34 • 좋은 책
내 식탁 위의 책들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창립 60주년 기념사



양성평등을 통한 가정의 민주화, 가족의 복리를 위해 달려온
대한민국 법률구조 60년 역사의 현장에서
백주년, 이백주년을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여성문제연구원의 방 한 칸을 빌려 시작한 첫 날, 여섯 명의 눈물겨운 호소를 들었다고 상담소 그 날 일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가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던 1956년 8월의 일입니다. 가정법원도 아직 생기지 않았고, 법률구조공단도 생긴 것은 훨씬 더 뒷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상담소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법률상담이라는 말도 생소하던 시절이었으니 여성, 가정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이 시작된 것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문제를 상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성 내담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상담은 우리들에게 법과 제도의 잘못된 점,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였고 이것이 가족법개정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에 집중하면서 한 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교육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조사, 연구와 출판 홍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소 사업 전반에 걸친 자원봉사와 후원의 손길은 상담소 발전에 힘을 더하는 동시에 인적, 물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재화의 건전한 순환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소는 1956년 8월 27일 첫 상담을 시작으로 창립 첫 해인 1956년에는 336건을 상담했고, 2015년도에는 74,468건을 상담했습니다. 전체로는 2015년 말 현재 본부에서는 1,469,900건, 전국 29개 지부에서는 2,115,901건을 상담해 총 3,585,801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한 해 상담소 본부와 전국지부에서 진행한 소송구조는 모두 1,258건에 이릅니다. 소송구조를 처음 실시했던 1972년 4건에서 시작하여 1989년까지 매년 10건에서 20건 사이로 증가하던 소송구조는 새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한 2008년 234건을 기록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사건을 넘어 임대차, 채권 채무는 물론 개인 파산 면책 등 신용회복과 관련한 상담 및 소송구조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백인변호사단의 적극적인 소송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어머니·며느리학교, 기러기 교실, 할머니할아버지학교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시작한 사회교육 강좌와 소외계층 대상의 무료 결혼식, 가족법, 세법, 노동법 등 법률강좌를 처음 시작한 상담소는 사회 곳곳 종교 시설이나 대학, 복지관, 노인대학 등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지금은 가정과 법이라는 본연의 주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회와 가정의 변화에 집중하여 한부모가정, 비혼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캠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가족법 중심의 법교육, 초중고 학생 대상의 폭력예방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법연수원 등의 임상실습 기관으로써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법개정운동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제 개정, 이혼제도, 친권 및 양육권 제도의 개선 등을 주도해 왔으며,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법에 의거한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가정문제의 현장을 지켜오면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의 변화를 가장 앞서 실감하게 되는 곳이 상담소입니다.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높은 이혼율,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역시 우리 사회 가정문제의 현상입니다. 4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라는 현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복리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현상입니다. 어떠한 원인으로든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사람 모두 한 가정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뿐 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비혼모 등 날로 다양해지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욱 내실 있게, 더 확대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문제는 물론 북녘에도 상담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만전의 준비를 다하려고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역사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지내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상담소의 역사를 자랑하고 축하하자는 것 보다는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상담소가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되새겨보면서 더 없이 충실한 사회적 자산으로 더 넓고 더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상담소의 이러한 마음가짐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통해 그 다짐을 더욱 굳건히 하는 자리입니다.

상담소는 지난 60년 역사 동안 언제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전문 법률구조 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통 받는 이웃들, 소외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그간 상담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담소를 위해 애써 주셨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담소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 사회 모든 가정,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번민하는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0월 12일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4)

한국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

가족의식의 변화와 남성의 변화

한국가족, 다양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비전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의 역할 및 과제

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다양성 증가와 관련된 변화의 특징적 양상을 살펴보고, 그러한 변동이 갖는 가족 삶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생활을 관통하는 계층적 효과를 통해 현재의 가족변화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가족내파(內波)의 부수적 산물에 다름 아님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한국가족의 변동과 가족다양성 담론

1. 가족의 변화와 가족다양성

가족변화를 둘러싼 가장 치열한 쟁점은 산업화 이후 핵가족화의 보편성을 주장한 파슨스(Parsons)와 구드(Goode)의 논의로부터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Parsons, 1964; Goode, 1968).

前산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이들의 핵가족화론은 이후 다양한 논박과정을 통해 가족이론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한국가족, 다양해지고 있는가?)

김 혜 영

숙명여대 산업정책대학원 교수

본고는 한국가족의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현대가족의 특징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가족다양성’을 면밀히 논

* 본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심포지엄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여 게재한다.

1) 본고는 필자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2014, 2015년)을 기초로 관련 자료들을 업데이트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가족다양성 담론은 핵가족의 보편성을 주장한 구조기능론에 대한 논란으로 출발하여 작금에 와서는 사회의 현대성 분석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변화에 대한 일반론적 주장이 현재 한국가족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국가족의 특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에는 반드시 가족의 보편성과 특수성, 변화의 동시성과 고유성을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가족변화에서 확인되는 가족변동의 동시성과 함께 서구와 같은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가족변동을 서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오늘날 한국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은 소위 핵가족의 위기에 의한 파생적 산물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즉 한국의 핵가족 가운데 완결된 핵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심리적 여건이 미성숙함으로써 한국가족은 불완전한 핵가족화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장정섭, 1991, 181).

2. 가족다양성, 계층적 분화인가? 개인화인가?

한국가족의 근대성은 서구와는 달리 전통적 가족주의의 변용 및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서구의 그것이 남녀의 성별분업과 '낭만적 사랑'에 근거한 친밀성에 기초해 있다면, 우리사회는 부계혈통에 근거한 위계적 가족구조의 토대 위에 '낭만적 사랑'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남성 개인에게는 부양의 책임과 여성에게는 돌봄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어 개인의 가족구속성이 강화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한국사회 안팎의 복잡한 변화는 곧 가족변동으로 이어졌고, 특히 90년대 후반 한국사회가 경험한 경제위기는 이제까지 군사독재를 통해 구조화된 정치적 권위주의와 부계혈통에 기초한 가부장적 핵가족의 균열을 가속화, 가시화하기 시작한다(홍찬숙, 2012, 2). 물론 여전히 가족주의와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특히 어머니의 헌신이 강조되는 가족문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세대들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의 추구가 점차 확산되는 이중적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

이다.

이때 연이은 탈권위주의 정부 출범 역시 사회전반에 걸쳐 이완된 정치문화를 확산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가부장적 핵가족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온 1990년 가족법 개정에서 이어 2005년 호주제의 폐지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가족구성원들의 개인권이 인식되고 정착되는 변화의 징후가 뚜렷하게 표출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강도 높은 글로벌 경쟁은 자본의 무한확장 및 이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와 비정규직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사회보장체제로 인해 가족생활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사적영역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은 시장에 의한 사적영역의 잠식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혼 및 비혼 인구의 증가와 최저출산 경향은 바로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화되고 시장화된 사회에서 결혼은 그 자체로 일종의 상징재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결혼은 단순한 개인간 결합을 넘어 경제적, 문화심리적인 계급화로 작동되고 있다는 주장은 매우 유효하다(배은경, 2009; 김혜영, 2011).

III. 가족의 위축과 주변부화

1. 가구의 축소와 가족의 개인화

가족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구규모와 형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가족의 세대별 가구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가구구성원은 1975년 평균 5.0명으로부터 80년 4.1명, 90년 3.7명, 2000년 3.1명, 2005년 2.9명, 2010년 2.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통계청, 2010). 또한 세대구성에 있어서는 단독가구의 증가와 직계가족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 1,2인가구의 비중은

거의 전 가구의 절반에 달하고 있어, 한국사회는 1,2인 가구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 이후 증가하던 혼인건수와 혼인율은 IMF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조혼인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혼인연령은 10년마다 2세씩 꾸준히 늦추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며, 2015년의 경우에는 남녀 평균초혼연령이 32.6세, 30세로 여성조차 초혼연령이 30세를 넘어서고 있다.

출산을 하락의 주요인으로 만혼화가 지목되고 있다. 만혼의 경향은 혼인이 늦어짐으로써 출산기회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독신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변화가 실제로 한국인들의 가족가치와 가족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진정한 가족다양성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쟁 역시 없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현대의 가족은 동거의 범위가 제한적이긴 하나 결혼 선택의 여부로부터 언제,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구성과 유지에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이념형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기꺼이 가족의 공간과 시간이 상호 분리되고 개인화되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2. 위기의 계층화와 주변화된 가족의 증가

최근 들어 급증한 이혼 및 미혼자 집단의 증가는 곧 자율적 개인들의 결혼형성 및 유지가 쉽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논리가 가족으로까지 침투함에 따른 가족시간의 감소는 가족친밀감의 교류와 소통을 줄이고 개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강화하라는 구조적 압력의 소산이다(신경아, 2012, 21). 따라서 현재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개인화는 시장화에 다름 아니며, 자율적인 개인으로서 평등하고 친밀한 부부 및 가족관계를 경험하는 일

은 대단히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계층적 현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계층적 양극화는 가족의 형태나 생활방식에서 있어 커다란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즉 현대가족의 특징으로 묘사되는 가족다양성 역시 특정의 계층에서는 자의적인 선택이지만, 자신의 선택이 구조화되어 있는 계층에서는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적 결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저소득 수입구조에 노출된 사람들이 혼자서 생활하는 삶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1인 가구의 증가율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높았으며, 이들 총 증가한 1인가구의 42%에 달한다. 이러한 증가요인은 곧 청년실업의 증가, 소득불안정으로 인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구이거나 결혼하지 않은 독신가구인 것이다.

또한 200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국제결혼은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경제의 재편이 초래하는 계층의 양극화와 농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변부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즉 국제결혼은 저소득층 혹은 중간계층이지만 한국여성들과의 초혼이 가능하지 않는 일부의 초·재혼 남성들이 내국인과의 결혼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후에 선택하는 결혼방식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미 국제 결혼한 이들 가족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2008). 즉 국제결혼이 갖는 문화적 이질성과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모순적 구조로 인해 이들의 결혼 및 가족관계는 대단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국제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이혼율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가족임금의 이데올로기가 깨어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가구가 맞벌이 혹은 2인 생계부양자 구조로 전환되는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 역시 계층적으로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즉 상위소득계층에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은 비록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중상위 소득이 보장됨으로써 여성취업을 통해 가족의 생활기회는 물론 여성개인의 지위향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소득계층에서의 여성 취업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지속적인 따른 성 역할 거부나 가족 내 권력관계가

허용하는 한에서 가족 내 성별분업구조의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하지만, 그만큼 가족 내 역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결혼관계의 해체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가족내외부적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김혜영, 2014). 그러나 이혼의 결과는 젠더의 불평등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혼으로 인해 여성들은 돌봄자와 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데, 그간의 성차별적 노동시장 상황에서 여성의 시장지위가 남성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고 보면 이혼의 결과는 종종 여성의 빈곤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남성 가구주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1980년 1,169천명에서 2010년 4,497천 가구로 가구 수는 약 4배 가량 증가했으며, 비율로는 1980년 14.7%에서 2010년 25.9%로 증가해 왔다(통계청, 2010). 과거 여성가구주의 증가는 사별에 의한 것이었다면, 90년대 이후에는 미혼과 이혼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90년대 들어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는 두 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여성가구주는

1975년 대비 약 20배 가량이나 증가했지만,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까지 지탱해온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성별체계의 근간을 담당해 왔던 가족의 논리와 방식을 일정부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존하는 성차별적 가족문화가 나름 변동의 계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가족 내에서 수행되어온 자녀 및 노인 돌봄이 더 이상 가족을 통해 충족되기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가족돌봄의 기능적 공백은 커다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사건사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사실상 1위에 달한다는 보도는 이를 반증하는 것에 다름없다(한겨레, 2014. 5.2. 1, 4면).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적절한 보살핌 대리자를 찾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녀방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여기에 가족과 정부 및 사회가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진전 없는 상황에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상당한 우려를 낳게 된다. 이는 가족, 그 가운데 누구의 책임도 아닌 모두의 공동책임인 동시에 이러한 공동의 책임조차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몫이라는 인식은 자칫 부양책임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³⁾

2) 예컨대, 빈곤층과 차상위층 계층의 아동들은 보호자 없이 방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빈곤아동실태조사(월드비전 60주년 아동복지포럼 발표자료, 월드비전 운영 복지관 등록 빈곤아동(10-15세) 3,604명과 이들의 주양육자 2,542명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설문조사한 결과이다(이봉주 외, 2009.))에 의하면 10세에서 15세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하루에 12시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이 있느냐”와 같은 질문에 대해 빈곤아동의 약 37%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 아동이 나홀로 방치되는 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특성별로 아동방임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예컨대 양부모 가정에 비해 모자가족아동이 방치될 가능성은 58%, 부자가정의 아동이 방치될 가능성은 88%나 높고, 결식실태에서도 10세-11세의 전체 아동은 13.3%가, 빈곤아동은 22.6%가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아동 가운데 0.5%가 저녁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운데 빈곤아동은 9배나 높은 4.5%에 달하고 있었다(이봉주 외, 2008, 2009,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이들 아동의 위험노출 가능성은 매우 높아 이들 아동의 사고사율은 최대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건강보험공단, 통계청, 2013; 한겨레 2014.6.10. 5면 종합).

3) 최근 들어 자식을 돌보고 부양하는 부모역할에 몰두했으나 노후에 자식에게 버림받는 상속빈곤층의 문제나 부양료 소송 등 부모부양을 둘러싼 가족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예컨대 한 일간지에 따르면 2007~2013년 사이 선고된 부양료 청구사건 판결문 226건 가운데 부모, 자식간 소송이 144건이며, 10건 가운데 3건이 바로 상속빈곤층 부모가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 이들의 31.4%는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해지만, 이들의 월 생활비는 34만원에 불과하고 노령연금 등으로 생계를 잇는 경우가 94.4%, 36.1%는 단 한명의 자녀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부양료 소송은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2년 68건에서 2013년 25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중앙일보, 2014.6.17. 1면 종합).

IV. 결어 및 제언

최근 한국가족은 단일한 규범만으로는 가족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저출산, 혼인율감소,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위기 지표와 더불어 성·세대·계층적으로 분화양상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이제까지 행위규범의 원형으로 인식되어온 가족주의의 현저한 약화와 평등한 개인관계에 기초한 개인권 강화라는 문화변동의 맥락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권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변화를 단순히 개인권의 확장이나 사적 영역의 자율성 확대로만 이해할 경우, 여성이나 노인, 주변부 집단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위험 또한 적지 않다. 요컨대,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현대가족의 특성은 사실상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의 논리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오히려 기존 노동시장에서 활용해온 차별 기제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취약계층의 주변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구조의 개인화에 따른 가족안정성의 약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결과로 젠더와 세대, 계층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결혼 및 가족관계의 해체로 인한 여성한부모와 여성가구주 집단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결혼관계의 해소가 여성과 아동의 빈곤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불행한 결혼관계를 탈피한 여성들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 이들의 선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음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김혜영, 2008).

최근의 가족변화는 단순히 가족현대성을 의미하기 보다

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시장화의 파고가 가족내부로 침투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가 갖는 위력은 집단으로서 가족이 갖는 의미와 기능의 변형을 넘어 개인노동력의 상품화와 시장화의 우선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주의에 기초한 가족의 개인화, 자율적 개인들의 친밀한 공간으로서 가족생활이 전면에 부각되는 동시에 '친밀성의 영역'으로서의 가족은 철저히 계층화되고 있다.

중산층의 삶을 보장받는 가족들은 유년기부터 스펙과 실적관리를 위한 가족의 팀플레이를 통해 핵가족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지만, 자유주의적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유동성과 불안정성에 직면한 대다수 중하위계층이나 노동자 계층은 가족구성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가족 돌봄 노동에 긴박된 여성들은 양질의 인적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주기와 관련하여 노동경력 단절을 경험하거나 가족과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용정책과 함께 여성의 경력추구가 선택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돌봄 노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한된 재화와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둘러싸인 우리사회에서는 포괄적인 가족지원체계의 구비를 위해 무엇보다 가족의 삶을 지지하고 배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장일변도의 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중요성은 쉽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가족지원정책에는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부모의 배경이나 가족형태에 따라 아동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부양의 책임을 사회가 자임하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된다면 저출산 문제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상담 통해 전환의 계기 찾고, 가족과 함께 한 캠프 만족도 높아

사건번호 2015버1***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9회,
음주문제 집단상담 3회
피해자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3회,
음주문제 집단상담 1회, 자조모임 1회
부부상담 3회, 부부 교육강좌 1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27회 실시

상담기간

2015. 11. 3. ~ 2016. 4. 25.

상담경과

행위자(남편)와 피해자(아내)는 결혼한 지 3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4세)가 있다. 야구동호회모임을 하는 행위자는 출근을 이유로 토요일에 아이를 맡아달라는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 소에 위탁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가 2016년 3월부터

평일 오후 4시까지 다시 일을 하고 있다.

초상담 시 피해자는 행위자가 집안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문을 잠그는 행동을 반복하여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고, 경제력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며, 피해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자신의 여가시간만 원하여 매우 지친다고 심정을 피력하였다. 한편 행위자는 부부 모두의 음주문제를 갈등원인으로 꼽았다. 술을 마시고 부부가 대화를 하다보면 피해자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행위자가 극단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식으로 다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상담 초기에도 계속되어 부부가 여전히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던 상황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행위자가 상담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관찰되었다.

행위자는 외동아들로 가정생활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는데 집단상담에서 자기와 비슷한 구성원을 보면서 분노를 극단적으로 표출하였던 점을 반성하고 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집단구성원들의 경험, 특히 연배가 높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위자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한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 행위자와 피해자 및 자녀는 1박2일 부부캠프에 참여하였는데 행위자는 아내,

아이와 함께 가서 지내는 그 자체가 좋았고, 특히 아이의 만족도가 높아서 후속 캠프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행위자의 노력을 인정한 피해자도 신경질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

사건번호 2015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3회,
음주문제 집단상담 3회, 교육강좌 1회,
피해자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1회 등 총 15회 실시

상담기간

2015. 10. 29. ~ 2016. 4. 28.

상담경과

행위자(남편)와 피해자(아내)는 결혼한 지 20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남1녀(18세, 14세)가 있다. 5~6년전 초등학교 아이들이 혼자 자기 무섭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자기 시작하였고, 행위자는 코를 골아 부부는 각방을 쓰고 있다. 사건 당일 부부 모두 술을 마셨는데 행위자는 피해자와 함께 자려다 거절당하자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언과 폭력을 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상담초기에는 개별상담과 교육강좌에, 상담중기에는 집단상담 및 음주문제 집단상담에 참여하였다. 행위자는 본 처분 이전에도 비폭력대화에 대한 인식을 하고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해왔으나 피해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상담을 받으며 피해자의 그러한 부분까지도 받아

들이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점과 본 처분 이전에도 잘 지내려는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최근 1~2년 사이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행위자의 재택근무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피해자의 자유롭지 못한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로 충돌이 잦았던 것으로 진단하였다.

종결상담 시 행위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점이 애로사항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았고,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과 폭력을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인데 자신이 그 일부에 속하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폭력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상담을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심했다고 반성하였다. 부부의 관계 회복에는 여행도 한 요인이 되었는데, 부부가 함께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지에서 '우리는 한 팀'이라는 의식이 굳건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

사건번호 2015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2회,
부모폭력행위자 집단상담 5회, 교육강좌 2회,
피해자 전화상담 2회 등 총 15회 실시

상담기간

2015. 12. 2. ~ 2016. 5.19.

상담경과

행위자(아들)는 2015년 7월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초등학교

교 5학년인 딸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8월에 이혼하였다. 행위자는 2015년 7월 사건 당일, 만취상태에서 자살을 하려고 부엌칼로 자신의 손목과 허벅지를 찌르고 창문을 떼어 계단으로 던져 피해자(아버지) 소유의 창문유리를 손괴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당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당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배우자와 별거중인 상태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술을 마시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하였으며 재물손괴 행위가 폭력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초상당시 행위자는 무직 상태였는데 곧 이전에 하던 택배일을 다시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손목을 다쳐 바로 취업을 할 수는 없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다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외도를 하였고 지금도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으며 이복형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또한 행위자가 어렸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방에 혼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근 채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사실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총체적인 사실로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상담 욕구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상담욕구는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피해자는 몸이 좋지 않아 상담소에 올 수 없다고 하면서, 행위자가 전과 달리 술을 마시지 않고 언행도 달라졌으며 행위자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될 것이라고 아들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였다.

행위자는 상담초기부터 중기까지는 무직상태로 시간에 여유가 있어 계획된 상담일정에 충실하게 임하였으며, 부득이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행위자는 부모에게 폭력을 하여 상당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성인자녀로 구성된 집단상담을 통하여 같은 경험을 가진 동년배들과 함께 자신의 밑마음을 들여다보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행위자는 딸의 채팅과 이성교제 등 문제행동에 대한 고민을 하였는데 딸에 대한 애정과 돌봄이 부족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고 포용할 수 있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되었다. 상담 중기에 들어서면서 행위자는 취업을 하였고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다. 낮에는 잠을 자고 오후 근무를 준비하여야 하는 사정을 배려하여 상담 시간과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사건 발생 후 상담을 받는 동안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고, 일상 생활이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잘하고 있다고 행위자의 변화를 인정하였다.

행위자는 삶의 의욕을 되찾고 술을 절제하면서 생업에 임하였다. 피해자와도 잘 지내며 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담을 종료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면접상담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 * 사전 예약 필수

인터넷상담

- <http://www.lawhome.or.kr>
- <http://www.miznet.daum.net>(가정법률)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 평일 : 오전 9시~오후 5시

“추억도 많이 만들고, 아이와의 사랑도 키웠습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3일(금) 오전 9시~ 24일(토) 오후 3시
- 장 소 : 용인 에버랜드
- 참가자 : 비혼모 59명, 자녀 59명,
양지수 차장, 김혜영 과장, 이선숙 상담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강서권주거복지센터),
이영옥 소장(트리인마인드 연구소),
허소임 미술치료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박현진 무용동작치료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애란 네트워크 직원 및 탁아 자원봉사자,
상담소 직원 등 총 180명

가을을 맞이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본소에서는 비혼모 59가정과 함께 에버랜드로 1박2일 캠프를 다녀왔다. 이번 캠프에는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천,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의 비혼모 가정에서도 참여 하였다. 참가자들은 홈브릿지 캐빈호스트에서 숙박을 하며, 비혼모 가정에 필요한 주거 및 법률관련 강의와 상담을 받았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탁아 및 미술치료, 동작치료 등의 별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교육과 상담이 끝난 이후 참가자들은 에버랜드 직원의 안내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에버랜드 놀이시설 자유이용 및 야간페스티벌 등을 관람하였다. 이번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와 상담 지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며,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프로그램 개관

A.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

1.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 강사 : 양지수 차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강서권주거복지센터)

강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 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를 하였다. 강의 이후 강사는 주택임대차 재계약 상의 유의사항, 임대주택 신청자격 여부 등 참가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임대주택과 관련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되었고, 특히 강의 후 필요한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2.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사 : 조은경 상담위원(본소)

강사와 보조교사들은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분,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가정폭력 등 비혼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다양한 상담 사례를 들어 강의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 상담을 원하는 참가자들을 위한 개별면접 상담이 있었다. 현재 인지 청구 등의 소송 진행 중인 참가자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의 과정을 상담하였고, 상담소의 도움으로 양육비 판결을 받았으나 실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참가자는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하였다. 또한 임신 중 자녀의 부모부터 폭행을 당해 자녀를 조산하고 이로 인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었는데, 자식의 부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참가자에게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상담 후 소송 구조 등의 보다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참가자들은 상담 및 교육 내용이 매우 유익했으며, 무엇보다 어렵고 복잡한 현재의 상황에서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를 알게 되어 매우 힘이 된다고 하였다.



B.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비혼모들이 주거복지 강의 등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은 연령별로 준비된 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3. 「3~4세 아동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 강사 : 박현진 무용동작치료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강사와 보조교사들은 아동과 인사, 유아체조, 원 만들기 놀이를 통해 아동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파라슈트를 이용하여 빠른 움직임과 멈춤 등의 적절한 움직임 조절, 숫자세기, 공 띄우기 동작, 파라슈트 위에 올라가 서로 재밋게 해주기 등의 놀이를 통해 그룹 내 다른 아동과 서로 배려하는 연습을 하였다. 아동들은 이러한 간접적 사회경험을 통해 사회성 및 자발성을 연습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으나 곧 놀이와 동작에 집중하였고, 다른 어머니들과도 상호작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게 되는 등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 「5~7세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 강사 : 허소임 미술치료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신문지 찢기 놀이와 인형 만들기 등의 감각을 자극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감성 지능을 촉진시키고, 여러 연령의 아동들과 그룹 활동을 통해 배려와 협동심을 기르며, 아동들 스스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첫 번째로 신문지 찢기 놀이를 시작하였는데, 신문지를 가운데 쌓아두고 의자로 둘러싸서 한계 설정을 해줌으로써 아동들이 찢고 날리는 활동을 하지만 안전한 테두리 내에서 놀이를 하도록 하였고,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아이들은 신문지를 찢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문지를 모두 찢은 후에 신문지 더미를 날리고 서로 신문지 더미 속에 들어가도록 한 후 숨겨주는 놀이를 하며 아동 상호간 서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된 꾸미기 재료를 통해 각자 만들고 싶은 인형 혹은 사물을 만들고, 완성 후에는 각자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었다. 아동들은 자신의 사진을 보며 매우 좋아하였고, 바닥에 있는 신문지 조각을 함께 정리하려 하는 등 프로그램 전과 달리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동들은 신문지 찢기 놀이를 하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긴장을 풀고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5. 「8~12세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 강사 : 이영옥 소장(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첫 번째 활동으로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지들을 골라 OHP필름에 붙여 색필름지를 만들고, 그 위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과 잘 그릴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오려 붙였다. 아동들이 만든 다양한 색 필름지를 함께 보면서 그 누구도 같을 수 없다는 것, 자신만이 가진 고유의 색들, 표현되는 색들, 고유의 모습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색에도 다양한 색깔이 있듯이 자신에게도 다양한 색과 같은 다양한 모습과 성격, 재능이 있으나,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꿈에 가까워 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활동으로 아동들은 하드보드지 안에 자신의 꿈, 하고 싶은

일, 소망 등을 한 개에 하나씩 적어 낚시줄로 매달아 소망 별을 만들었다. 그리고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대부분 아동들에게 꿈은 미래의 '직업'과 같은 것이었고, '직업=돈'이라는 공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꿈'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이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였고,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물론 한계가 있긴 하였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자신만의 고유의 색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미술활동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던 듯, 각자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 가져 주기를 바라던 아동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에 집중해 나가기 시작했고, 더 잘해나가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들은 새롭게 경험하는 미술활동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으며, 자신이 만든 작품에 만족해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6. 「용인 에버랜드 체험」

강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용인 에버랜드로 이동하여 자녀와 함께 에버랜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버랜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파리 월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및 '어린이 전용놀이시설' 등을 이용하고, 공연을 관람하며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장미정원에서는 자녀와 보낸 행복한 시간을 기념하는 사진도 촬영하였다. 참가자들은 에버랜드 내에 위치한 캐빈 호스텔에서 숙박하면서, 다음날 오전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점심식사 후 해산하였다.



□ 참가자들의 한 줄 소감

- 1) 언제라도 손 내밀면 따뜻한 도움을 주실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 속 안심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 어린 아이마냥 신나게 하루를 즐기며, 추억도 많이 만들고, 아이와의 사랑도 키웠습니다.
- 3) 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들과 좋은 얘기들을 나누고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을 수 있었고, 엄마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 4) 꼭 알아야하는 맞춤형 법률지식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5) 직장생활과 아이 학교생활을 챙기다 보면 아이와 단 둘이서 여행을 꿈꾸기에는 현실이 벽차 마음 한 구석 아이에게 미안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루 아이와 추억이 생기는 기회가 있어 너무 좋아요.
- 6) 우리 안의 토끼와 거북이를 보며 흥내를 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형들과 신나는 놀이기구를 탄 것은 덤입니다. 혼자서 아이 둘을 데리고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 7)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단지 놀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법률상담도 받고, 주거와 관련된 알찬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를 많이 얻어 가게 되었어요.
- 8) 지금 이 순간을 놓치기 싫어서 동영상으로 많이 찍어뒀습니다. 매번 일하느라 많이 신경써주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신나게 놀고 나니, 저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아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별 다섯 개 만점에 다섯 개예요.

□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바라는 점

- 현재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교육 바우처 등 한부모 가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100만원이라는 소득기준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된다. 2인 가족 200만원도 한 달 살기에 빠듯한데, 한부모가정이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인 만큼 자녀가 좀 더 클 때까지만 혜택을 차등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바우처가 있지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달라서 어떤 곳은 24개월이 지나면 바로 바우처를 중단하기도 한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면 어려움이 있다.
-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과 달리 공공임대주택도 없고, 법률상담을 받으려 해도 다른 도시로 나가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런 캠프에 오지 않으면 그나마 정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술 교육지원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 양육비 판결을 받고나서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었으면 좋겠다.

□ 정리

강의가 끝난 후 진행되었던 상담 및 설문조사, 후기 등을 통해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경제적·제도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비혼모 가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혼모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일, 가정, 양육을 병행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캠프만으로 비혼모들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과 비혼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며, 육아와 일에 치인 이들에게 꿈같은 1박2일 가족여행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다. 참가자들이 즐거워하던 모습과 귀가 버스에 탑승할 때 아쉬워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고, 더 많은 비혼모 가정이 다음 번 캠프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은경 상담위원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폭언, 외도 등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조정

법률구조 2015-492

담당 : 이지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3세)와 피고(남, 31세)는 2012년 10월경에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3세)을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신혼초기 호프집을 경영하면서 술 마시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3년 1월경 원고가 임신하여 직장을 휴직하게 되자 다툼이 잦아졌고, 피고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 및 양육비도 주지 않았고 2015년 5월경에는 피고의 외도사실까지 밝혀졌다. 2015년 9월경에는 피고의 폭력으로 원고는 집을 나와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친권 및 양육자지정에 있어 이견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4.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 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40만 원씩 말일에 지급한다.
4.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5,000,000원을 2016. 7. 8.까지 지급한다. 만약 지체 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외에는 향후 상호간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지급판결

법률구조 2015-495

담당 : 이정은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여, 39세)과 상대방(남, 43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6세, 남, 12세)을 두었으나 2010년 4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녀 1인당 각 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일하며 받은 월130만 원의 소득으로 사건본인들을 어렵게 양육하여왔다. 하지만 갈수록 사건본인들의 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5.31.)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3. 19.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약정보다 과소하게 양육비를 지급했던
상대방에 대해 과거양육비 4천5백만원 등 판결**



법률구조 2015-497
담당 : 김상훈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2세)과 상대방(남, 49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 (남, 19세, 여, 17세)을 두었으나, 2009년 1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로 월 60만 원씩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야 2011년 10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월 30만원씩 총 18회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청구인은 비정규직으로 미용업에 종사하여 월 8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으나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아 미용업에 계속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광주지방법원 2016.6.2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2016. 4. 2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무인수와 보증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해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5-500

담당 : 남기용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내용 : 신청인(여, 58세)은 2002년 10월경 거주를 목적으

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60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신청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2003년 6월부터 화장품 외판을 시작하였지만 실적이 좋지 않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할 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신청인은 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 주었지만, 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그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늘어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신청인은 노숙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오다가 교회의 도움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고 시간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버는 월 50만원 남짓의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채무에 대한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 신청인은 파산선고 및 면책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29.)
 채무자를 면책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많은 빚을 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고령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5-507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내용 : 신청인(여, 76세)의 배우자는 병원을 개업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신청인은 이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 주었다. 하지만 2004년경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졌고, 이후 3일 만에 사망을 하였다. 신청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생전 채무로 인해 경매로 매각되었고, 매각 이후에도 신청인에게는 많은 채무가 남게 되었다. 신청인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많은 채무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교회에서 숙식하며 파지를 줍거나, 반찬가게에서 일하면서 받는 30여 만 원의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사실상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3.)
 채무자를 면책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개인파산사건 소송구조 요청을 받고 신청인에게 파산연체 절차, 소요시간 등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76세의 많은 나이임에도 목소리도 정정하셨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집이 인의경매로 넘어가고, 자녀들라는 연락이 두절이 되어 힘들어 하고 계셨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4명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는 신청인은 기초연금 20여만 원, 파지수집으로 버는 몇 만 원이 전부여서 그 누구 보다 연체가 절실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패스트트랙 지원으로 약 5개월 만에 연체에 이르렀고, 불운한 채무자로서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연체으로 희망을 찾았다면서 기뻐하시는 신청인에게 하루빨리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도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상군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10여년간 양육비를 5회 정도만 지급한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 등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15-508

담당 : 이승석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3세)과 상대방(남, 40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6세, 여, 14세)을 두었으나 2005년 6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이혼 당시 구두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존재하였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 50만 원씩 5회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그쳤다. 청구인은 그 후 재혼하여 2011년 경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재혼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현재 혼자의 수입으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인천가정법원 2016.5.24.)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6. 6.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 분할 지급 등 강제조정

법률구조 2015-519

담당 : 최원영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남, 43세)과 상대방(여, 38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남, 10세), 사건본인2(남, 9세), 사건본인3(남, 6세)을 두었으나, 2011년 8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1,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사건본인3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소득이 없던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3의 양육비로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상대방은 사건본인1,2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후 청구인은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돈을 사건본인3의 양육비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머지 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3년 4월경 재혼을 하면서 사건본인 3을 데려왔으며, 친권자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이 여전히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부족한 양육비를 대출을 통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강제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4.20.)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6. 5. 25.부터 2016. 12. 25.까

지 8회에 걸쳐 매월 25일에 각 125만 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부터 2030. 1. 1. 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녀들을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강제조정**

법률구조 2015-531

담당 : 권순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5세)와 피고(남, 46세)는 1998년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사건본인들(여, 16세, 여, 13세, 남 10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사건본인3이 조산되어 인큐베이터에서 위급한 고비를 넘길 때 자신이 출장하던 대학의 여대생과 1년이 넘게 교제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별거하던 중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이 압류되어 처분될 위기에 놓인 적도 있었고, 직장을 구해도 1년이 못 가 그만두는 등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2014년 7월경 피고는 지적장애인 사건본인3을 야구방망이와 먼지떨이 등으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하였고, 2015년 4월 사건본인1을 폭행하여 사건본인2가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강제조정 (서울가정법원 2016.3.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현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노원구 소재 oo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

에 관한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이행인수한다. 다. 피고는 위 가.의 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대출금 이자 합계 240만원(월 80만원 × 3개월)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라.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1,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3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가. 원고는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처음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에 사건본인3을 피고에게 인도한다. 나. 사건본인들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발생, 거주지 이전, 해외유학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4. 가.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2의 양육비로 2016. 4. 1.부터 위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5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건본인3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은 2016. 4.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일정(1). 원고와 사건본인3의 면접교섭 : 월 1회, 셋째 주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8:00까지(1박 2일간)(2). 피고와 사건본인1,2 의 면접교섭 : 월 1회, 넷째 주 일요일 15:00부터 21:00까지(당일)

나. 가능하면 위 가.의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하되, 사건본인들의 복리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하며,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다. 서로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성인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15-573

담당 : 남현우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남, 52세)과 상대방(여, 49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22세, 남, 21세)을 두었으나 2002년 6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혼 후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들었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며 사건본인들을 성실히 양육하였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 전부터 운영하던 호프집을 통해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6.5.30.)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혼 후 10여년 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15-540

담당 : 권민경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9세)과 상대방(남, 49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남, 22세)와 사건본인2(남, 14세)를 두었으나, 2006년 7월 경 협의이혼 하였다.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이혼 당시 구두로 양육비 70만 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가 어렵고 수입이 일정치 않아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서울가정법원 2016.4.20.)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5,000,000원을 2016. 4. 29.까지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2의 장래 양육비로 2016. 4.부터 사건본인2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질병과 실직 등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납입금마저 납부하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5-541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내용 : 신청인(여, 59세)은 1997년 경 남편의 사업이 잘못되어 생활이 어려워졌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 후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6년에 걸쳐 총 7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로 일하던 배우자가 2015년 9월 계약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었고, 신청인 역시 자궁내막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악성빈혈을 앓고 있어 더 이상의 소득활동이 어려워졌다. 결국 신청인은 워크아웃을 통한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3.)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자의 지병으로 월 30만원의 양육비에서 월 80만원으로 양육비 증액 조정

법률구조 2015-574

담당 : 문준석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변경

내용 : 청구인(여, 51세)과 상대방(남, 52세)은 1998년 11월경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여, 18

세)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2009년 10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이 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았다. 이혼 후 청구인은 한부모가정 창업대출 지원금을 받아 미용실을 창업하여 월 60만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현재는 암 진단을 받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반면 상대방은 운수업에 근무하며 4억 원에 달하는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있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4.6.)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 4.부터 2016. 10.까지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했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15-578

담당 : 변범식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20세)과 상대방(남, 24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3년 6월경에 헤어졌으며, 슬하에 사건본인(남, 3세)을 두고 있다. 사실혼 해소 당시 사건본인은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혼 해소 이후 청구인은 월 60만위 정도의 소득으로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해 오고 있으나,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5.4.)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6. 6. 1.부터 2024. 10.26.까지는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2024. 10. 27.부터 2031. 10. 26.까지는 매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2030. 10. 27.부터 2031. 10. 26.까지는 매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심판비용 중 1/4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폭언과 음주, 폭행 등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8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1세)와 피고(남, 59세)는 2013년 1월경에 혼인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가정 내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도 원고에게 심한 욕설, 폭언,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함께 운영하는 점포의 수입은 모두 자신이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낭비하는 일이 잦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상습적인 도박과 음주로 온전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원고는 이혼을 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5.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업 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6-19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내용 : 신청인(여, 55세)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농자재 사업의 실패 이후 지인의 권유로 2013년경 치킨 집을 개업하였다. 어렵게 권리금까지 주고 시작하였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신청인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카드를 사

용하였다. 엮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 배우자와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종합병원에 갔는데 그곳이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병원이어서 가족 모두 격리조치를 당하였고, 결국 그 사이 가게는 영업을 하지 못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하며 벌어오는 70여만 원의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오던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3.)
채무자를 면책한다.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
10여년 이상 소식이 끊긴 외국인 아내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5-276

담당 : 장경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1세)와 피고(여, 50세)는 2005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중국국적의 피고와 혼인하기 위해 중국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같이 입국하였다. 피고에게는 과거 혼인에서 얻은 2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함께 한국에 오지 못하였고,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지 1개월 후부터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매일 울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한 지 2개월만에 피고는 아무 말 없이 중국으로 돌아갔다. 다음 해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곧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10여년 간 연락이 끊겼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6.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대학 학비 일체 등 조정**

법률구조 2015-299

담당 : 전태우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

내용 : 청구인(여, 42세)과 상대방(남, 49세)은 1993년 8월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남, 21세)과 사건본인2(남, 15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2005년 3월 협의이혼 하였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이혼에 협의해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계속되는 폭언 및 폭력으로 인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에게 곰팡이 핀 햄을 먹이는 등 사건본인들을 방치하였고, 사건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폭력을 견디지 못한 사건본인1이 2007년 경 먼저 외가로 혼자 찾아왔으며, 상대방은 뒤이어 사건본인2를 청구인에게 보냈다. 이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오다가 이후부터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상대방은 청구인의 재혼을 이유로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건본인2는 심리 치료도 받아야 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빚을 내며 양육비를 부담해왔으나, 혼자서는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수원지방법원 2016. 7. 12.)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 지급한다.
3.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청구인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사건본인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 일체(등록금 + 용돈)를 상대방이 부담한다.
5.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혼 후 10여년 동안 단 한번만 양육비를 지급한 부에 대해 과거 및 장래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15-472

담당 : 윤재경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6세)과 상대방(남, 48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2세)을 두었으나, 2005년 11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혼 후 상대방은 양육비를 한 차례 준 이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우울증 및 무릎통증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돈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다. 현재 사건본인에게는 학원비만 한 달에 35만원, 보험료와 도서비용까지 합치면 월 70만원의 양육비가 들어가고 있으며, 더 이상 청구인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기가 어려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춘천지방법원 2016. 7. 20)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1,2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17.10.30. 400만원, 2018.10.30. 400만원, 2019. 10. 30. 4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위 각 지급기일에 지급을 지체하면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나머지 금액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미지급금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2017.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120만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은 수입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지급하고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합계금이 120만원이 되도록 한다.

3.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농한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4:00부터 18:00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4.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채무에 대한 부담까지 지운 남편에 대해 이혼 등 조정

법률구조 2015-437

담당 : 이재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내용 : 원고(여, 52세)와 피고(남, 51세)는 1990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남매(여 26세, 남 24세, 사건본인 여 14세)를 두고 있다. 피고는 결혼 초부터 지나치게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가재도구를 던지고 폭언을 하였으며 심지어 임신한 원고의 배를 때려 유산을 시킨 일도 있었다. 이로 인해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녀들은 탈모증을 겪고, 피고가 무서워 혼자서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는 혼인 중 상당기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도박을 즐겨 원고는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고 피고의 빚까지 갚아야 했다. 또한 피고는 다른 여자를 만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는데, 반면 원고에게는 사소한 일에도 의심하는 등 의처증이 심하였다. 이외에도 수시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원고를 괴롭혔고 피고의 가족까지 찾아와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서울가정법원 2016.6.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월 30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2012. 3. 25.까지는 월 5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 피고 상방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딸과 사위는 8년 전 혼인하였고, 결혼 1년 만에 예쁜 손녀를 낳았습니다. 딸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딸이 출산휴가 후 회사에 복귀한 때부터 주중에는 손녀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 저희 부부가 키우다가, 주말에는 딸네 집으로 데려가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적절하게 살아오던 저희 노부부에게 손녀는 삶의 크나큰 즐거움이었고, 손녀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딸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간지 몇 시간만에 사망하였고, 딸의 장례식이 끝나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사위는 손녀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사위는 손녀를 데려가면서 저희 부부가 손녀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처음 몇 주 이후부터는 저희 부부가 손녀를 만나는 것을 이핑계 저핑계 대고 방해하더니, 얼마 전부터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저희 부부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을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살아 있는 손녀마저 못 보게 된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사위는 직장 때문에 자신이 직접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자신의 누나에게 아이를 맡겨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러느니 그동안 아이를 키워온 저희 부부가 계속 손녀를 키우고 싶습니다만, 그러한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손녀를 만나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A 따님이 사망하였으므로 손녀의 아버지인 사위가 손녀의 단독친권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사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위가 손녀의 양육을 도와줄 보조양육자로 외조부가 아닌 아이의 고모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귀하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이 어머니의 사망 후 3년 간 아이를 키워온 외조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서울가정법원의 판례가 있는바, 이에 따르면 귀하 부부의 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

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외조모가 3년 가까이 아이를 양육하며 아이와의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이를 아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단절시키는 것이 아이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외조모가 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아이의 모에 갈음하여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면서 한 달에 2번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12:00부터 20:00까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6. 2. 11. 선고 2015느단5586 판결 참조).

김민선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봉사 및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이화여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습 소감을 싣는다.

김 솔 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처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계 실무수습을 시작할 당시, 저는 두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짧게나마 공익분야에서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전문에서의 첫 학기를 마친 후 조금은 이른 시기에 실무수습의 첫 걸음을 내딛은 터라, 기대감과 함께 걱정도 되었습니다.

짧은 2주였지만, 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문제를 안고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분들을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상담 참관을 하고, 보고서와 상담 답변 등 선생님들이 주신 과제를 수행하면서 하루하루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술서와 소장을 작성해보고, 상담보고서에 쓸 판례들을 찾으려다가 모르는 것에 부딪힐 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가장 감사하게 느낀 점은, 법을 통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짧지만 법전문원에서 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왜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고 또 장차 어떤 모습의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눈앞에 주어진 공부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곳에서 2주 동안 실무수습을 하면서, 막연히 책 속의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졌던 법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이 사람

들의 삶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탄탄한 지식을 갖추어 더욱 성실히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상담소에서의 경험은 법전문에서의 남은 기간동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동기의 부여가 될 뿐 아니라, 훗날 법조인으로서는 활동할 때에도 큰 가르침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상담소에서의 2주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게, 친절하게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배움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실무수습을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정혜(시인 · 본소 자원봉사자)

60년 곳곳이 문 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바람에 선 아픔들이 사연 하나씩 안고
 어떻게 할까요? 문 두드리고 있다
 그 서걱거리는 속내의 답을 찾아주려는
 한 젊음 늙은 목묵한 열정들이 있다
 함부로 연민하지 않고 그개 속인 누군가를
 다시 꿈꾸게 하는 그들의 시간 속에
 미미한 한 점인 나의 시간 물었다
 15년 봉사의 보람을?
 그 시간은 누군 도움 시간이 아니라
 나의 어떻게 할까에게
 험겁게 품 넓혀 흘러가자고
 날 다독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일 즈음)

월플라워

감독 스티븐 크보스키

출연 로건 레먼, 엠마 왓슨, 에즈라 밀러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후반, 할리우드에 10대 영화 붐이 일어났다. 1990년대 말의 10대 영화는 청소년의 실질적인 고민을 다루되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든가 제인 오스틴, 쇼테를로 드 라클로 등의 고전을 현대화함으로써 그 무게를 완화시키곤 했다. 에이미 해커링의 <클루리스>를 필두로 로버트 이스코브의 <슈즈 더 맨>, 로저 킴블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길 정거의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팀 블레이크 넬슨의 <오> 등이 여기 속한다. 1980년대 청춘영화는 폭주족, 왕따, 게이/레즈비언, 결손가정 자녀 등 사회의 시선에선 소수자 취급 받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내세우되 해피엔딩으로 따뜻하게 감싸안는 게 주된 경향이었다. 존 휴스의 <브랙퍼스트 클럽>과 <식스틴 캔들스>, <페리스의 해방>,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아웃사이드>,

조엘 슈마허의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하워드 도이치의 <프리티 인 핑크> 같은 영화들은 두고두고 청춘영화의 현대적 고전으로 손꼽히며 레퍼런스로 작용한다. 10대 영화가 ‘한때의 유행’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치부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유행’이야말로 10대의 삶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위 영화들은 특정 시기 미국 10대들의 문화인류학적 보고서일 뿐 아니라, 타 국가 관객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정서적 울림을 잊지 않았다. 사실, 10대의 삶은 어디에서나 고달프긴 마찬가지니까.

<월플라워> 같은 경우, 굳이 고른다면 1980년대 청춘물의 흐름에 좀 더 가깝다. 1990년대 초반, 말 못할 상처를 가진 찰리(로건 레먼)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에게 인생은 언제나 서먹하고 어색하며 불편하다. 어느 날 찰리는 타인의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는 샘(엠마 왓슨)과 패트릭(에즈라 밀러) 남매(정확하게는 의붓남매)를 만나 스스로를 ‘불량품’이라 일컫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삶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이들에게는 모두 약점이 하나씩 있다. 찰리에게는 죽은 이모와 친구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그 기억들을 회피한다. 샘은 언제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남지들과 구질구질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염증을 내면서도 사랑의 약자에 머무르는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언제나 쾌활하고 자신만만한 모습만을 내보이는 패트릭은 성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아직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다.

영화의 원제는 ‘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다. 한국 개봉제는 이중에서 ‘월플라워’라는 단어만 떼어냈고, 이는 파티 등에서 아무도 말을 걸거나 춤을 신청하지 않아 벽 앞에서 있기만 하는 인기 없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영화에서 그 의미는 조금 더 확장된다. 그건 파티로 은유되는 인생 자체에 선불리 끼어들지 못하고 언제나 지켜보거나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더 가까워진다. 패트릭이 이름 대신 “아무것도 아닌 애(nothing)”으로 불리는 건 세상의 모든 월플라워들의 악몽이자, 또래들 사이에서 어떤 전형성의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커다란 가

능성 양쪽 모두로 기능하게 된다. 다시 한 번 원제를 보자. 'perks'는 '특전'이란 뜻이다. '월플라워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특전'은 뜻밖의 우연이나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회피하는 것에 익숙했던 주인공들은 상처에 정면으로 맞서는 법을 배우고,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이해한다. 다른 이들의 일반적인 선택과는 좀 이상하게 달라 보이더라도, '월플라워'로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은밀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그 극복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특전'으로 남는다.

영화는 16, 17살에 불과한 이 소년소녀들이 어떻게 벽에서 등을 떼고 걸어 나와 무리 속에 섞여들어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춤을 신청하게 되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나는, 우리는 무한한다"라는 외침으로 이어지기까지 설득력 있는 현실성을 담보한다. 그들의 뒤쪽에서 울려 퍼지는 데이빗 보위의 노래 [Heroes]는 그들만의 찬가가 된다. <월플라워>는 이제 막 인생의 첫 단계에 접어든 어떤 청춘에게, 그리고 그런 시절을 보냈던 성인들에게 '바로 내 이야기'라는 한숨 섞인 탄성을 내지르게 할 것이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2016년 9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한수자 선생님, 강종협, 김영주, 김지후, 김태주, 박수열, 박효선, 이혜민, 정수경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미옥, 김소이, 김진아, 송미란, 심미숙, 이승주, 임주용,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관 님

• 학생 자원봉사

윤혜정, 김수민, 이경민, 곽민주, 박주연, 강은영, 황지혜, 차혜진, 신수현, 이민주, 남보라, 전승민, 정주은, 이진실, 김현지, 손서영, 김주영, 김수정, 황정민, 이에스더, 손준호, 김우람, 임익호 님

후 원

• 일반회원이 되신 분

최선영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상담소 소식

본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가정폭력의식개선 교육 영상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제작·보급

본소는 2016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삼성의 이웃사랑 성금)을 받아 가정폭력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식 교육사업으로 가정폭력의식개선 교육 영상과 매뉴얼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은 영상 제작자를 전자입찰로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가정폭력의식개선 영상 제작” 입찰공고 후 전자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마감, 기술심사, 개찰 등의 절차에 따라 최적의 제작자로 두물머리픽처스(대표: 서동일)를 선정하였고, 제작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였다. 시나리오에 따라 초벌 영상을 완성하였고 시사 후 수정, 보완을 거쳐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제목의 가정폭력의식개선 교육 영상 완성본을 제작하였다. 또한 영상의 내용을 소개하고 가정폭력의식 개선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영상의 상영시간은 24분 32초이고, 브리지멘트는 김병후 정신과 전문의(본소 이사)가 맡았다. 영상의 교육대상은 일상생활에서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구체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상의 내용은 1.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2. 가정폭력의 잘못된 통념 3.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등 4부분으로 구성하였고, 실제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로 가정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가정폭력사건의 법적 처리과정을 설명하

여 향후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제작된 영상 DVD 100개와 매뉴얼은 9월까지 전국의 본소 지부 및 가정폭력상담소, 유관기관 등에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교육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과 차연실 상담위원이 사업을 주관하였다.

영상 교육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며,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 재발 방지 및 성행교정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 - 서대문복지박람회

본소에서는 9월 24일(토) 서대문구 연세로 차없는 거리에서 상담소 직원 7명과 자원봉사자 38명 등 총 45명이 『서대문구 복지박람회』에 참여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 및 가족법개정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족법상식퀴즈풀기, 가족법 개정 서명운동, 법률상담 및 상담소의 프로그램에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으며, 법 개정 서명 999명 및 가족법 교육 102명, 법률상담 14명 등 총 1,115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가족법 퀴즈 풀기 활동에서는 닥터던지기, 목찌빠 게임, 주사위 게임 등을 하면서 가족법 퀴즈를 풀어 남녀노소 참여자 모두 자칫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 교육에 모두 즐겁게 참여했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로부터’라는 주제로 에코백에 그림그리기 체험에서도 남녀노소 모두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꼭 알아야 하는 가족관련 법 이야기, 법률구조가 무엇인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교육 외에도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즉석에서 법률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관련사진 2면)

가재울 중학교, 법률구조체험교육

본소에서는 9월 28일 가재울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교사들(11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와 가족법개정운동사에서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한 영상 시청과 가족법 강의가 있었다. 강의 후 학교폭력을 주제로 가재울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역할을 맡아 형사모의재판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교육 후 소감발표에서 법률구조가 무엇인지, 상담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법률을 쉽게 접하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교육부에서는 9월 22일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공포”라는 주제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48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관계에서 느끼는 불공정함과 이를 교정하기 위한 기술 및 자기주장 훈련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황현정,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정근정 변호사, 오동준, 권혁채 법무관

용강노인복지관 출장상담

최수진 상담위원 (9월 26일)

출장법교육

- 9.1.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상담원역량강화 교육
조은경- 대전 연수원
- 9.5. 학교폭력예방교육
오동준, 권혁채 - 양산초등학교
- 9.9. 광명광성초등학교 학부모대상법교육
조은경- 광명광성초등학교
- 9.24. 서울시민을위한출장법교육
복미영 - 서대문복지박람회
- 9.26. 학교폭력예방교육
권혁채- 양산초등학교
- 9.28. 법률구조체험교육(가재울중)
조은경 - 상담소
- 9.30. 학교폭력예방교육
오동준 - 양산초등학교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9월 7일과 9월 3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을 하였다.

곽배희 소장, 본소 창립 60주년 관련 인터뷰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9월 13일 동아일보와 명절과 관련 가족관계 특히 이혼을 중심으로 인터뷰 하였다. 19일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최인수 부회장, 박형기 편집주간 등 관계자들이 내소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지인 <법무사>의 '만나고 싶습니다'란에 상담소 60주년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22일에는 조선일보와 본소 창립 60주년 관련 인터뷰를 하였으며 27일에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강의를 하였다.



지부소식

강릉지부

평창소방서 직원 등에 가정폭력예방 교육을 총 9회(781명) 실시하였다.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 성인 지력향상 교육을 총 5회(172명) 실시하였다. 9월 2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과 가사상담을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 형사조정을 총 8회 실시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9월 8일, 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모자녀양육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9월 22일 법원연계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으로 “상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0일, 24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를 실시하였다. 임경, 박경환, 윤준상, 최은철, 남호진, 전상훈, 박진수, 박대영,

이규명, 김주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연계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9회 실시하였다. 광주시법원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4회 실시하였다. 이해민, 김정혜, 문대근, 박지훈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기관지정사업으로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총 11회 실시하였다. 강은혜, 김진영, 김현수, 서정식, 양승철, 전태우, 최유나, 최지희, 한두환, 한승일, 홍성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9월 1일, 5일, 22일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6일 상담소 회의실에서 전주지방법원 판사 및 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13일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상담, 19일 전주지방법원 검찰청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1일 전주화산초등학교 1,2학년(245명) 및 교직원(60명)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지부

8월 30일, 9월 1일, 5일 경찰연계 피

해자 및 가해자 상담을 총 6건 실시하였다. 황인철, 박현민, 백신옥, 김성훈, 김수진, 최호웅, 조준범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9월 29일 탈북주민여성 대상으로 “통일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박진석, 박정두, 정수경, 이재경, 김창건, 장경아, 이동건, 노문기, 여지은, 홍지혜, 고정환,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9월 20일 경남 도내 여성청소년과 경찰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강의를 실시하였다. 21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홍강오, 백경석, 박인욱, 이창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9월 1일, 8일, 동주초등학교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춘천지부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및 직원 대상 가정폭력 법률구조지원 및 생활법률강좌를 총 9회 실시하였다.



2016년 8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6년 8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874건으로 본부가 6,671건, 지부가 6,203건이었다.

본부는 6,237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190건·소장 등 서류작성 207건·소송구조 37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520건·화해조정 595건·소장 등 서류작성 27건·소송구조 61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237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6년 7월에 비해 이혼(24.7%→24.9%), 사실혼해소(1.1%→1.5%), 위자료·재산분할(9.3%→11.1%), 친권·양육권(5.7%→6.9%), 면접교섭권(2.3%→2.4%), 친생부인(1.0%→1.1%), 이혼무효·취소(0.3%→0.4%), 부양(1.2%→1.9%), 유언·상속(5.5%→6.3%), 개명(0.4%→0.7%), 성변경(0.7%→0.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0.3%→0.4%),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2%→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237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361건(21.8%), 전화상담 4,580건(73.5%), 통신 및 인터넷상담 288건(4.6%), 순회상담 1건(0.0%), 지상상담 7건(0.1%)이었다.

2016년 9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572			
법률상담 (6,075)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280	4,563	231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279		166	52

* 2016/9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86,869건

지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671	1,361	4,580	288		순회 지상 1 7	6,237	190	207	37
강릉 (033) 652-9555	90	56	24				80	7		3
거제 (055) 633-7636	262	249	11	1			261		1	
광주 (062) 672-6011	70	16	54				70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60	152	78	1			231	26	1	2
군산 (063) 442-1560	125	58	53				111	11		3
대구 (053) 745-4501	397	213	20	4		출장 42	279	112	1	5
대전 (042) 520-5258	239	54	180				234	4	1	
제주 (064) 753-9421	204	66	124				190	9		5
동해 (033) 535-0188	91	46	45				91			
목포 (061) 273-2514	76		76				76			
부천 (032) 667-2314	244	67	157				224	20		
성남 (031) 707-6661	303	183	76	5			264	32	3	4
수원 (031) 243-4600	448	152	172			출장 51	375	71		2
순천 (061) 753-9910	181	75	99				174	6		1
충구 (02)2238-6554	226	198	26				224			2
안동 (054) 856-4200	86	13	47				60	26		
울산 (052) 246-9568	143	49	85				134		6	3
익산 (063) 851-5113	416	135	265			출장 10	410		5	1
인천 (032) 865-1120	327	159	133				292	25		10
전주 (063) 244-2930	505	210	144	126	24		504			1
정읍 (063) 535-3705	95	27	60				87	6	1	1
진주 (055) 746-7975	135	38	68				106	22		7
창원·마산 (055) 261-0280	210	105	86	5			196	10		4
청주 (043) 257-0088	253	60	82	3			145	104	4	
춘천 (033) 257-4688	357	64	39	1		출장 156	260	97		
태백 (033) 554-4004	125	33	76			출장 15	124			1
평택·안성 (031) 611-4251	142	59	72				131	6	4	1
제천 (043) 644-5690	91	31	56				87			4
포항 (054) 283-7555	102	28	72				100	1		1
지부총상담	6,203	2,596	2,480	146	24	출장 274	5,520	595	27	61
총 상담	12,874	3,957	7,060	434	24	출장 274 순회 1지상 7	11,757	785	234	98

**2016/8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1,074건

내 식탁 위의 책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종이 위의 음식들



정은지 지음
2013년, 엘리스

텔레비전을 이리 저리 돌리다보면 몇 곳에서는 틀림 없이 이른바 ‘떡방’이 나오곤 한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먹고 살아온 이야기라던가, 어떤 음식에 대한 집중 탐구와 더불어 문 단기 전에 그 식당에 꼭 가봐야 할 이유 등을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유명인들의 냉장고를 보여주며 이름난 요리사들이 그 냉장고를 털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멋진 요리를 만들어 내는지 겨루기를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는 낙이 없어 먹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분석이나 냉소적인 평가도 있어서 한 편으로는 공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먹고 사는 일은 인류 최대의 과제였으며, ‘내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나는 너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였다던 시바랭이었던가. 우리 사회가 한 그릇 쌀밥이 최고의 로망이던 시기를 벗어나면서 미식 혹은 탐식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 먹는 일에는 반드시 굶주림을 벗어나는 것과 미식 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치 한 보시기, 장아찌 한 접시에 온갖 추억과 그리움이 서리기도 한다. 시대의 작가 황석영도 감옥 안에서 먹던 갖가지 기이한 음식들과 이제는 맛볼 수 없는 ‘노티’ 한 조각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들을 책으로 엮어 내지 않았던가.

어려서 서양의 책들을 읽으며 참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작은 아씨들>에서 에이미에게 손바닥을 맞게 했던 ‘라임 절임’ <키다리 아저씨>에서 제류사가 만들던 사탕이다. 그리고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할아버지에게 가져다주고 싶어서 감추었

던 흰 빵의 맛도 내가 먹던 식빵과 어떻게 다른지 참으로 궁금했었다.

경상도 집안의 내가 결혼하고 먹게 된 ‘갈치속젓’, 지금도 갈치속젓을 먹을 때마다 <태백산맥>에서 소작인들이 산사람이 된 아들의 일로 낙심하고 있는 마님에게 정성을 다해 끓여다 주었던 잣죽과 그에 곁들였던 갈치속젓을 생각한다.

이 책 「내 식탁 위의 책들」은 부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종이 위의 음식들’이란 부제가 말해주듯이 지은이가 읽어온 책들에 나온 음식들을 ‘여행자의 식탁’ ‘모험가의 식탁’ ‘탐식가의 식탁’ ‘치유자의 식탁’ ‘생존자의 식탁’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어릴 때 내가 궁금했던 에이미의 ‘라임 절임’도 ‘라임 피클’로 나와 있고, 재미있게 읽었던 <초원의 집>에 돼지 잡는 이야기도 나와 있다. 맛을 상상하는 즐거움과 그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었고, 나도 기억나는 <토지>의 계란 프라이 이야기와 조지 오웰의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 나오는 홍차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다.

정은지는 번역인이며 글쟁이로 자신을 소개하는 젊은 작가다.

먹을거리라는 것은 실제 입으로 맛보는 즐거움 이외에 글로 읽으며 상상하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나는 요즘도 일본 만화책 <심야식당>과 <어제 뭐 먹었어?>를 신간이 나올 때 마다 사들이는가 보다.

이숙현 편집부장

2016년
10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시청
-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3:30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대상 : 본소 법률상담 내담자, 사전 예약 필수)
- ▶ 일정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12월은 휴강)
- ▶ 강사 : 김명순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6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10월 20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1월 24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12월 22일(목)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 상담

※ 10월 강의일정이 27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1956년, 우리 사회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시기에 가부장제의 질곡 아래 신음하던 여성을 인간의 자리에 올려놓고 양성평등의 기치 아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의 법률적 구제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 문을 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념식

- ⌚ 2016년 10월 12일(수) 오전 11시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기념전시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展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의 기억들

- ⌚ 2016년 10월 10일 ~ 10월 14일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